

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5. 10. 27 규칙 제497호
일부개정 2016. 3. 11 규칙 제837호
일부개정 2018. 12. 14 규칙 제94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>

제2조(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) 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>

1. 농·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용인농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농업인조직체
2. 수도작(水稻作), 원예, 축산, 특작, 농산물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

제3조(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) ①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읍·면·동장 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>

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>

③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

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〈신설 2016. 3. 11〉

④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8. 12. 14]

제4조(지원금의 결정)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, 지원금액은 운용기금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〈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〉

제5조(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 기금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지원금을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〈개정 2016. 3. 11〉

[제목개정 2016. 3. 11]

제6조(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)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·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. 〈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〉

[제목개정 2018. 12. 14]

제7조(지원금 정산보고)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3. 11, 2018. 12. 14〉

② 삭제 〈2018. 12. 14〉

제8조 삭제 〈2018. 12. 14〉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4-H회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부칙 <2016. 3. 11 규칙 제8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14 규칙 제94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금 정산보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금을 지원받은 기금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6. 3. 11>

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사업정산서

○ 지원금 집행상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입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			
지원금				
자부담금				

- 붙 임 : 1.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
2. 지원금 집행내역 1부

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용 인 시 장 귀하